

# 강남드림스타트 아동 1:1 학습 멘토링 협약서

본 협약서는 「강남드림스타트 아동 1:1 학습 멘토링 사업」을 진행함에 있어 서울교육대학교(이하 “서울교대”라 한다)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(이하 “강남드림스타트”라 한다)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제1조 【목적】

본 협약은 강남구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기초학력증진과 인성함양 및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1:1 학습 멘토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“서울교대”와 “강남드림스타트”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【기본원칙】

“서울교대”, “강남구”는 소외계층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내용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## 제3조 【협약사항】

- 가. “서울교대”는 자원봉사자 모집, 선발 및 교육과 학습 교재 개발 등을 담당한다.
- 나. “강남구”는 학습지도 및 멘토링 사업의 총괄적인 운영 및 감독을 담당한다.
- 다. “서울교대”와 “강남구”는 사업과 관련 통합사례회의 등 참석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.



#### 제4조 【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】

“서울교대”, “강남구”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업무상 비밀을 본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이 종료,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유출하거나 협약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#### 제5조 【신의성실의 원칙】

“서울교대”, “강남구”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간 긴밀한 협조 하에 협력하며,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

#### 제6조 【협약기간 및 효력】

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019.12 까지로 하되 협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본 협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며, 상호 협의에 의하여 협약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 할 수 있다

“서울교대”, “강남구”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. 3.



서울교육대학교

서울특별시 강남구

총 장

김 경 성 (인)

구청장

정 순 룬 (인)



강남드림스타트